

## J. Habermas 의 진리합의론

### 이 구 술

(서울대 박사과정)

1. 들어가는 말
2. 진리합의론의 기본 전제들
3. 진리의요구와 정당성의요구
4. 담화의 논리
5. 이상적 언어상황
6. 맷는 말

### 1. 들어가는 말

Habermas 는 진리합의론(Konsensustheorie der Wahrheit)을 전개하기 전에 이제까지의 진리론 특히 상응론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답하면서 상응론에 맞서는 합의론의 윤곽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볼 때 Habermas 는 상응론과 대결하면서 상응론의 대안으로서 합의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 합의론의 근본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1) 참 또는 거짓인 것은 문장 또는 주장이 아니라 진술이다.
- (2) 진리는 확언적 언어행위와 관련된 타당성요구이다. 한 진술이 참이라는 것은 그 진술의 타당성요구가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 (3) 담화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사이의 합리적 합의를 진술이 얻을 수 있을 때, 오직 그 때에만 진술의 타당성요구는 정당화된다.
- (4) 합리적인 합의는 이상적인 언어상황의 조건 하에서 논증적으로 얻어진 합의이다.

위의 네 명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합의론을 이루고 있다. 이 중 (2), (3), (4)의 명제가 합의론의 중요한 명제이면서 또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Habermas 는 의사소통적 행위를 하는 사람은 임의의 언어행위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편적인 타당성요구를 제기하고 그의 이행가능성을 가정한다고 본다. 진리는 이상적 언어상황의 조건을 가진 담화 속에서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타당성 요구라는 것이다.

Habermas 는 진리의 의미는 특정한 언어행위의 화용론(Pragmatik)과 관련해서 밝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그의 진리합의론은 의사소통적 행위 중 특별히 언어행위를 중심적으로 취급하는 보편화용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보편화용론에 근거한 Habermas 의 진리합의론의 골격을 살펴보고 진리합의론이 가진 문제점을 다루어 보기로 한다.

### 2. 진리합의론의 기본 전제들

Habermas 는 진리합의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우선 지금까지의 진리론이 부딪힌 세 가지 문제들에 답하면서 진리합의론의 골격을 보여준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진리상응론과

\* 이 논문은 1987년 1학기 박사연구 논문으로 발표된 것임

## (이구슬)

합의론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드러내주고, 합의론이 언어화용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세 가지 문제들

(1) 진리의 담지자는 무엇인가? 즉 우리가 참 또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2) “P는 참이다”라는 형식의 문장에서 “~는 참이다”라는 표현이 논리적으로 불필요한가?

(3) 우리가 주장하는 사실이 우리의 경험대상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나?

1. 첫번째 물음에 대한 Habermas의 답은 다음과 같다. 문장, 주장(Behauptungen, assertion), 진술(Aussage) 중 진리의 담지자는 진술이다. 진리는 우리가 진술을 주장하면서 진술과 더불어 제기하는 타당성요구(Geltungsanspruch)이다. 주장은 확언적 언어행위(Konstatativer Sprechakt)이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장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주장하는 진술이 참이라는 요구를 한다. 만약 이 타당성요구가 정당화된다면 그 진술은 참이다.)<sup>1)</sup>

문장이 진리의 담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상이한 언어들의 문장들이 동일한 사태를 나타내고 또는 동일한 언어의 상이한 문장들이 동일한 사태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주장이 진리의 담지자가 될 수 없는 까닭은 진리가 비에피소드적 성격을 가진 반면 주장들이 언어의 에피소드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Strawson의 말을 인용하면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 (My saying something)은 확실히 에피소드이다. 내가 말한 것 (What I say)은 에피소드가 아니다. 전자가 아니라 후자를 우리는 참이라고 표명한다.”<sup>2)</sup>

그러나 한 진술은 누군가가 이 진술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 즉 언어행위에 들어감으로써 단언적( assertorisch ) 힘을 얻는다. J. Searle은 동일한 명제적 내용이 명령, 질문, 약속, 주장과 같은 상이한 언어행위 속에서 반복될 수 있으나 오직 주장과 같은 확언적 언어행위 속에서만 명제적 내용이 명제의 형식 속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sup>3)</sup>

첫번째 물음에 대한 Habermas의 답에서 드러나는 것은 진리의 문제를 언어행위와 연관시켜 밝힌다는 점과 진리는 오직 확언적 언어행위가 제기하는 타당성요구라는 점이다. 진리를 언어행위와 연관시켜 밝히는 점은 언어의 수행적 측면을 강조하는 일상언어학파의 영향을 받고 있는 듯하다. 우리가 문장을 말하면서 한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어행위(Sprechakt)”란 개념은 보여주고 있다. Habermas의 보편화용론도 언어의 수행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그의 진리론 역시 화용론의 모티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4)</sup>

주1) J. Habermas, *Wahrheitstheorien*, S. 212, in : *Wirklichkeit und Reflexion*, (hrsg). H. Fahrenbach, Pfullingen, 1973, 이하 WT로 약함.

2) P. F. Strawson, *Truth*, p.33, in : *Truth*, (ed.) G. Pitcher, Englewood Cliffs, 1964.

3) WT, S.212.

4) J. B. Thompson, *Universal Pragmatics*, in : *Habermas Critical Debate*, (ed.) J. B. Thompson, D. Held, London, 1982.

2. 두번째 물음은 진리잉여론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Habermas 의 답은 다음과 같다. 의사소통적 행위의 연관성 속에서는 주장과 함께 제기된 타당성요구에 대한 해명은 불필요하다. 행위연관성 속에서 소박하게 가정된 타당성요구가 문제시될 때 비로소 진리의 물음은 제기된다.

“P”가 참이라는 것은 “P”라는 주장에 아무 것도 더하지 않는다. 우리가 “P”를 주장하면서 우리는 “P”에 대해 진리요구 (*Wahrheitsanspruch*)를 제기한다. 그러나 주장의 진리요구가 문제시될 때 이 타당성요구는 단지 “P는 참이다 / 는 참이 아니다”라는 형식의 메타언어적 확인에서만 주제가 될 수 있다.<sup>5)</sup>

Habermas 는 담화 (*Diskurs*) 와 행위 (*Handlungen*) 의 영역을 구분짓는데 행위의 영역이란 의사소통의 영역 (*Kommunikationsbereich*) 을 지칭한다. 경험을 하고 정보를 주고 행위를 수행하는 행위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행위와 연관된 경험 즉 정보를 교환하는데 이 영역 안에서 우리는 주장 속에 내포된 타당성요구를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인정한다. 담화는 논의 (*Argumentation*)로 특징지워지는 의사소통의 형식을 지칭한다. 이 형식 속에서 문제시 된 타당성요구가 주제가 되고 타당성요구의 정당화가 추구된다. 담화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정보도 교환하지 않고, 문제시된 타당성요구의 근거제시 (*Begründung*) 또는 거부에 도움이 되는 논의들을 교환한다.<sup>6)</sup>

두번째 물음에 대한 답은 행위와 담화의 차원을 분리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리가 그의 합의론에서 중요한 기반을 이루고 있다. 타당성요구가 문제시될 때 그것은 경험과 관련된 행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화의 차원에서 다루어진다는 것이다. Habermas 는 담화와 행위영역의 분리를 상응론과 대결할 수 있는 지침대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상응론의 입장은 진리의 문제가 경험과 연관된 행위의 영역에서 제기되고 해결된다고 보겠으나 Habermas 는 담화의 영역 안에서만 타당성요구의 정당화가 행해진다고 봄으로써 진리의 문제가 담화의 영역에서만 해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Habermas 가 주장하는데로 담화의 영역에서는 어떠한 경험도 교환되지 않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 문제는 담화의 논리를 밝히는 뒷부분에서 좀더 상세히 다루어보기로 한다.

3. 세번째 물음은 진리상응론에서 제기된 것인데 Habermas 는 Strawson과 Austin의 논쟁<sup>7)</sup>에 대해서 Strawson의 편에 서 있다. 이 물음에 대한 Habermas 의 답은 다음과 같다. 행위연관 안에서 주장들은 경험대상에 대해 정보를 준다. 담화 속에서는 사실 (*Tatsache, fact*)에 대한 진술이 토의된다. 진리의 문제는 경험대상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사실의 관점에서 제기된다. 사태 (*Sachverhalt*) 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경험의 명증성이 결정하지 않고, 논의의 과정이 결정한다.

사실과 경험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우리가 정당하게 주장해도 되는 것을 우리는 사실이라 부르며, 사실은 진술을 참인 것으로 만든다. 진술이 사실을 나타내고 묘사하고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사물과 사건, 사람과 그의 표현등 경험대상은 그에

주5) WT , S.213.

6) WT , S.214.

7) 두 사람의 논쟁은 *Truth*, (ed.), G. Pitcher )에 소개되었다.

### (이구술)

대해 우리가 주장을 하고 그에 관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장하는 그 무엇이다. 우리가 대상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이 주장이 정당화될 때 하나의 사실이다. 사실은 고로 대상과는 다른 지위를 갖는다. “사실이란 진술이, 그것이 참일 때, 주장하는 것이다. …… 그것은 사물이나 공의 표면에서의 사건처럼 목격되거나 듣거나 보여지지 않는다.”<sup>8)</sup> 대상과 더불어 나는 경험을 하고, 사실을 나는 주장한다. 나는 사실을 경험할 수 없고 대상을(대상에 대한 경험을) 주장할 수 없다. 내가 사실을 주장하면서, 나는 경험에 의존할 수 있고 경험에 관계한다.<sup>9)</sup>

행위연관성 안에서 우리는 경험대상에 대해 보고한다 (*informieren*). 그러나 한 보고가 의심스러울 때, 그리고 이 보고내용이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의 관점에서 토의될 때 비로소 사실에 대해 말하게 된다. 사실이란 현존하는 사태 (*existierende Sachverhalte*)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또는 사태의 의미는 담화와 관련이 없이는 밝혀질 수 없다. 물론 논의의 연관성 속에서 경험이 요구될 수 있다. 그러나 경험은 주장의 진리요구를 지지해줄 (*stützen*) 뿐, 진리의 요구는 단지 논의를 통해서 이행된다. (*ein-löst*) 경험에 기초한 (*fundiert*) 요구는 결코 근거지워진 (*begründet*) 요구는 아니다.<sup>10)</sup>

세번째 물음, 즉 사실이 경험대상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대한 Habermas의 답은 경험대상과 사실을 분리하는 것인데, 이 물음은 진리상응론의 근본적 물음이기도 하다. Habermas는 Strawson의 견해, ‘사실은 참인 진술이 주장한 것’이라는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Habermas와 Strawson은 Austin과 다른 사람들을, 사실을 사물의 모델 위에서 생각한다고 비판한다.<sup>11)</sup> 사실과 경험대상을 구분하는 Habermas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행위영역과 담화영역을 구분하는 것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사실을 담화에 귀속시키고, 경험대상을 행위영역에 귀속시키는 점에서 그러하다. 어쨌든 이러한 분리가 Habermas가 제안하는 합의론의 전제들이고 이 전제들은 합의론과 상응론의 차이점들을 부각시키고 있다.

Habermas는 세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합의론의 기본적 명제들을 제시했다. 이러한 명제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진리를 경험의 속성이 아니라 진술의 속성으로 보고 있고, 진리가 주장의 타당성요구가 논증적으로 이행될 수 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점이다. 우리가 근거지울 수 있는 (*begründen können*) 진술이 참인 진술이라는 결론을 Habermas는 내린다.<sup>12)</sup>

### 3. 진리의요구와 정당성의요구

Habermas는 네 가지 타당성요구, 이해 가능성(*Verständlichkeit*) 진리 (*Wahr*

주 8) P. F. Strawson, *ibid.*, p.38.

9) WT, S.215.

10) WT, S.218.

11) J. B. Thompson, *ibid.*, p.130.

12) WT, S.219.

heit), 정당성 (Richtigkeit), 진실성 (Wahrhaftigkeit)을 제시하고, 이 네 가지 요구가 ‘이성적임’ (Vernunftigkeit)에 공통의 근원을 두고 있다고 본다. 이 네 가지 타당성요구는 이 중 하나로 환원될 수 없는 것들이다. 네 가지 타당성요구는 유능한 화자들이 언어행위와 더불어 서로 제기하는데, 이 네 가지 타당성요구, 즉 언명 (Äußerungen)의 이해 가능성, 그의 명제적 요소의 진리, 그의 수행적 요소의 정당성과 말하는 주체의 진실성의 상호적인 인정 속에서 배경적 합의 (Hintergrund Konsensus) 가 이루어진다. 정략적이지 않고, 이해 (Verständigung)에 기반을 둔 의사소통은 이 배경적 합의가 작용할 때에만 방해받지 않고 진행된다.<sup>13)</sup>

네 가지 타당성요구는 의사소통이 방해받을 때 비로소 주제가 된다. 이러할 때 전형적인 물음과 대답이 등장한다. 한 언명의 이해 가능성이 문제시되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하는 물음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답이 해석 (Deutungen)이다. 한 언명의 명제적 내용의 진리가 문제시되면, ‘그것이 왜 그런 상태일까?’ 하는 물음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답이 주장과 설명이다. 만약 언어행위의 근거가 되는 규범의 정당성이 문제시되면, ‘왜 너는 그렇게 하지?’의 물음이 제기되고 이에 대해 우리는 정당화 (Rechtfertigung)로써 응수한다. 만약 상호작용의 연관성 속에서 상대방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되면 우리는 ‘그가 나를 속인 것인가?’ ‘그가 자신을 속인 것인가?’의 질문을 제기하고 이런 혐의를 받은 사람은 법정에서 심문을 받거나 의사와의 분석적인 대화에서 자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 그의 의도를 진심으로 표현하는지 또는 정략적으로 행동하는지는 그와 상호작용을 충분히 한다면 그의 행위를 통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실성은 진리와 정당성이 논증적 타당성인데 비해 비논증적 타당성이라고 볼 수 있다.<sup>14)</sup>

이해 가능성은 특정한 규칙능력을 발휘한다는 것, 즉 자연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대화상대자가 따르는 언어의 형식적 규칙이 분명하지 않을 때, 두 사람은 언어의 통일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해 가능성은 진리, 정당성, 진실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데, 이것은 의사소통일반이 방해받지 않고 진행되는 한, 실제로 요구는 이미 이행된 것이어서, 이것은 의사소통의 조건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이제 진리와 정당성만이 논증적으로 이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타당성이 진리의 합의론에서 중요한地位를 차지하게 된다.

Habermas의 합의론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진리 외에 정당성을 논증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타당성요구로서 본다는 점이다. Habermas는 도덕적 현상이 의사소통적 행위의 활용론적 연구에서 드러날 수 있다고 본다. 도덕적 현상의 세계가 상호작용의 참여자의 수행적 태도에서만 해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15)</sup> Habermas는 참인 진술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규범이 담화 속에서 근거지워질 수 있다고 본다. 규범의 권유 (Empfehlung) 속에 포함된 타당성요구에 대한 정당화는 주장 속에 합축된 타당성요구에 대한 정당화와 마찬가지로 논증적으로 겸증된다. 그러나 올바른 명령과 평가에 대한 정당화는 이론적 담화와 논

주 13 ) WT, S.220.

14 ) WT, S.221.

15 ) J. Habermas, *Moralbewußtsein und Kommunikatives Handeln*, Frankfurt, 1983, S.226.

## (이구술)

의의 구조에 있어서 다른 실천적인 담화에서 행해진다.<sup>16)</sup>

규범의 협조방식은 보통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행위 X를 해야 한다. 또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당위문장 (Sollsätze) 속에 표현된다. 당위문장 또는 명령은 협조하는 규범의 타당성요구를 표현한다. 모든 언어행위가 규범의 실행일 수 있지만 특정 부류의 언어행위만이 규범을 토대로 하는 행위주체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다. 명령 요구 부탁경고 금지 허락 권리 충고등이 그것인데 이것을 규제적 (regulativ) 언어행위라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주장 보고 묘사 설명등의 언어행위는 확인적 언어행위라 볼 수 있고 말하는 사람의 태도, 의견, 표현을 표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적 (repräsentativ) 언어행위가 있다. 여기에는 드러내다, 불투명하게하다, 은폐하다, 부인하다 등이 속한다.<sup>17)</sup> 타당성요구 중 진리는 확인적 언어행위에만 속하고 표현적 언어행위에는 진실성이 속한다. 그러나 정당성은 규제적 언어행위에 속하지 않고 규제적 언어행위 속에 가정된 규범의 현실적 타당성에 속한다. 개개의 언어행위의 정당성은 그것의 토대가 되는 규범의 정당성으로부터 유도되기 때문이다.

Habermas는 당위문장 속에 형식화된 협조하는 규범의 타당성요구가 실천적 담화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실천적 담화에서 규범의 타당성요구는 행의연관 속에서 소박하게 인정된 주장의 타당성요구와 같은 방식으로 가정적인 타당성요구로 변모된다. 담화 속에서 규범의 타당성이 유보된 채로 규범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다. 이론적 담화에서는 가능적으로 협조하는 사태 (사실)에 대한 진술의 진리요구가 주제가 되고, 실천적 담화 속에서는 보편적 명령의 권리가 제기하는 정당성의 요구가 주제가 된다.<sup>18)</sup>

실천적 담화를 통해 우리는 현실적으로 타당한 규범이 정당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올바른 규범이 현실적인 타당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현실적으로 인정된 규범의 타당성요구가 논증적으로 이행될 수 없고, 또는 논증적으로 이행 가능한 타당성요구를 지닌 규범이 사실상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이유로 실천적 담화의 결과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Habermas는 본다.

Habermas는 진리의 합의론이 이론적 담화와 실천적 담화 사이의 논리적 차이를 무시하지 않고서 진리와 정당성을 논증적으로 이행 가능한 타당성요구로 동일화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sup>19)</sup> 이에 반해 형이상학적 진리이론은 실천적 물음을 이론적 물음과 같은 의미에서 진리일 수 있는 (wahrheitsfähig) 것으로서 설명하고, 실증주의적 진리이론은 실천적 물음의 진리가능성을 일반적으로 부정하는 극단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Habermas는 비판한다.

---

주 16 ) WT, S. 226.

17 ) WT, S. 228.

18 ) WT, S. 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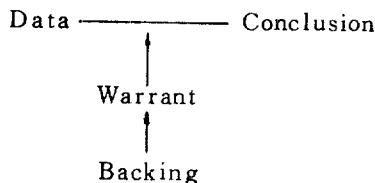
19 ) WT, S. 230.

#### 4. 담화의 논리

Habermas는 앞에서 진리, 정당성의 타당성요구가 오로지 담화 속에서 논증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담화 속에서의 논증적인 이행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는 담화의 논리를 통해 합의를 지향하는 논의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려 한다.

담화의 논리는 진술의 논리로 부터 구별되고, 가능한 경험대상의 구성에 있어 본질적인 범주들을 연구하는 선형적 논리로 부터 구별된다. 담화의 논리는 화용론적 논리이다. 논의가 문장들의 연쇄로 이루어졌을 때에만, 문장으로부터 다른 문장으로의 이행이 논리적 결합에 의해 또는 경험토대와의 연관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논거의 적절성(*Triffigkeit*)이 논리적 펠연성 또는 경험의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는 기대는, 논의가 문장들의 연쇄로 이루어졌다는 잘못된 전제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논의가 문장들의 연쇄가 아니라 언어행위의 연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되면 이러한 선택은 생기지 않는다. 말의 화용론적 단위들 사이의 이행(*Übergang*)은 논리적으로 근거지워질 수 없고 그것은 경험적으로도 근거지워질 수 없다.<sup>20)</sup> Habermas는 논의가 '비형식적 논리'의 형태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론적 또는 도덕적 물음에 대한 합의는 연역적으로도 또는 경험적 증거로도 강요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21)</sup>

논거(Argument)는 주장, 명령 내지 평가의 타당성요구를 우리가 인정하도록 동기부여해야(motivieren) 근거지음(Begründung)이다. Habermas는 논의의 형식적 구조를 S. Toulmin의 단순화된 다음 도식으로써 기술한다.



여기서 D는 자료이고, C는 주장이고, W는 추론의 규칙(Schlüfregel)이고 B는 W를 정당화해주는 구체적 증거들이다. 이러한 도식을 Habermas는 이론적 논의와 실천적 논의에 적용해 본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주장의 타당성요구가, 실천적 논의에서는 명령 또는 평가의 타당성요구가 이행된다.<sup>22)</sup>

이 도식에 우리가 다루려 하는 주장과 권유의 예를 적용해볼 수 있다.

(1) 설명이 필요한 주장(C) : 이 그릇에 있는 물이 팽창한다.

- 설명(D) : 이 물은 가열되었다.
- 법칙 가정을 통한 근거제시(W) : 이에 해당되는 열역학의 법칙
- 가정의 지지를 위한 사건적 증거들(B) : 반복해서 관찰된 물체의 변화들, 부피, 무게 온도 등

주 20 ) WT, S.241.

21 ) J. Habermas, *Moralbewußtsein und Kommuniuatives Handeln*, S.73.

22 ) WT, S.242.

## (이구술)

- (2)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권리(C) : 당신은 주말까지 50만원을 갑에게 주어야 한다.
- 정당화(D) : 갑은 당신에게 4주간 돈을 빌려 주었다.
  - 행위규범을 통한 근거제시(W) : (이에 해당하는 규범, 예를 들어) 빌어 쓴 돈은 정해진 기한 안에 돌려주어야 한다.
  - 규범의 지지를 위한 사건적 증거(B) : (규범적용의 결과와 부수결과에 대한 제시, 예를 들어) : 돈을 돌려주는 것은 모자라는 자금의 여유있는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Habermas는 합의지향적인 논거의 힘이 논거에 사용된 언어와 개념체계의 적합성(*Angemessenheit*)과 결합되어 있다고 본다. 논거의 모든 부분이 동일한 언어에 속할 때 만족할 만한 논거가 나온다는 것이다. 선택된 언어체계는 어떤 부류의 경험이 주어진 논의연관성 속에서 증거로서 채택될 수 있는지, 즉 어떤 종류의 지지자(Backing)가 허용되는지를 결정한다. 왜냐하면 관찰자료를 우리가 논거에서 도입하려 하는데, 이것은 이미 해석된 경험들이고, 따라서 선택된 언어체계의 범주적 테두리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또한 W와 B에서 등장하는 진술 사이에 어떠한 연연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도 논거는 B로 부터 W로 나아가는 정당화로 부터 합의지향적인 힘을 이끌어낸다. 정당화는 법칙정립적 가정의 정초에 있어서는 귀납의 원칙으로써 설명되고, 행위규법의 정초에 있어서는 보편화의 원칙으로써 설명된다.<sup>23)</sup> 귀납은 유한한 수의 단청진술로부터 보편적 진술(가정)으로 비연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정당화 하기 위한 중간원칙(*Brückenprinzip*)으로서 작용하고, 보편화는 규범적용의 결과와 부수결과에 대한 묘사로부터 규범으로 이행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중간원칙으로서 작용한다.<sup>24)</sup>

그러나 Habermas는 귀납적인 확증을 위해 허용된 자료들은 선택된 언어체계를 통해 선택된 것이고, 경험은 어떠한 독립적인 검증의 척도를 나타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귀납은 한 논거에 나타나는 보편적 진술과 동일한 언어체계 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다른 보편적 진술과의 정합을 보장한다. 이러한 조치는 개개문장을 실재(Realität)와 대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언어체계 전체를 실재와 대면시킨다. 근거제시언어의 실재에 대한 관계는 이전의 연구발전의 과정에 의해 즉 인지적 발전(Kognitive Entwicklung)을 통해서 이미 조절된다. 이 인지적 발전은 개개의 논의에 앞서 있는 것이다.<sup>25)</sup>

Habermas는 행위와 담화의 영역을 구분하고 담화 안에서는 경험에 대한 정보교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담화의 구조에 대한 서술에서 보면 주장 또는 권리자를 정당화하기 위한 자료들, 근거들은 우리의 경험과 연관된 것들이라고 보여진다. Backing에 해당되는 자료들은 모두 경험적 자료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B로 부터 W로 나아가는 단계에서 합의지향적 힘이 있다고 한다면 Habermas가 제안하는 담화를 통한 합의는 철저

주 23) Habermas는 Kant의 정언명법이 보편화의 원칙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모든 인지주의적 윤리학이 Kant의 정언명법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Ibid., S.73.

24) WT, SS. 244-245.

25) WT, S. 247.

히 경험에 근거한 합의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경험과 담화의 엄밀한 구분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여진다. 담화 안에 경험의 요소가 끊임없이 개입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Habermas는 위와 같은 비판을 피하기 위하여 담화 속에 도입되는 경험적 자료들이 이미 해석된 언어체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Habermas는 한 언어가 대상영역에 적합한지 아닌지 그리고 설명을 요하는 현상이 선택된 언어가 적합한 그 대상영역에 배열되었는지 하는 물음 자체가 논의의 대상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담화의 형식적 속성은 고로 담화의 차원이 항상 변화될 수 있고 그리고 먼저 선택된 언어-개념체계가 경우에 따라서 부적합한 것으로서 인식되어서 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인지의 발전은 본질적인 언어비판의 형태 속에서 완성된다. 논의가 지향하는 합의는 구조적으로 그 속에서 경험이 해석되는 근거제시언어를 되묻고 수정하고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만, 오로지 그 때에만 진리의 기준으로 간주 될 수 있다.<sup>26)</sup>

실천적 담화에서는 진리요구의 검토에서처럼 외적인 실재에 대한 경험으로 되돌아갈 수 없고, 또한 명령과 결합된 정당성요구를 언어와 외적 자연 사이의 관계로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성의 합의론은 진리의 합의론과 같은 문제에 부딪히지 않는다. 규범의 선택을 고려하는 데서 제기되는 실천적 물음은 단지 모든 참여자들 사이의 합의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가능성적 관계자들 사이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정당성의 합의론은 실천적 물음 일반이 진리일 수 있는지 (*Wahrheitsfähig*)의 의문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명령, 금지의 정당성이 논증적으로 이행 가능한 타당성요구인지 그리고 단순히 주관적인 무엇은 아닌지의 의문이다. Habermas는 이러한 의문이 비인지주의적 윤리학의 근거가 된다고 본다. 그는 이러한 연관성 속에서 보편화의 원칙 (*Grundsatz der Universalisierung*)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보편화의 원칙은 내용과 타당영역이 개별적인 모든 규범을 합의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서 제외시키는 역할을 한다. 보편화시킬 수 없는 규범에 대해 특정한 상황 하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특별한 이해관심 사이의 태협이 이루어진 것이고 논의가 지향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sup>27)</sup>

Habermas는 윤리적 언어의 근본개념도 인지적 도식으로서 파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인지적 도식은 세계상 (*Weltbilder*)의 진화와 더불어, 도덕체계의 진화와 더불어, 도덕적 의식의 전개와 더불어 역사적으로 형성된다.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개인들과 단체들에게 그들 자신의 공통적인 욕구의 진실한 해석을 허용하는 도덕적 언어를 우리는 적합하다고 본다. 선택된 언어체계는 욕구의 해석을 허용해야 되고, 이 해석 안에서 담화참여자는 그들의 내적 자연을 분명하게 하고,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실천적인 담화 역시 그의 형식적인 속성을 토대로, 참여자들이 항상 담화의 차원을 바꾸고, 전해진 욕구해석의 부적합성을 깨달을 수 있다는 보증을 주어야 한다고 Habermas는 주장한다. 참여자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그리고 가능한 상황의 관점에서 그들이 무엇을 원

주 26) WT, S. 250.

27) WT, S. 251.

## (이 구술)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하는지 말하도록 허용하는 언어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sup>28)</sup>

Habermas는 담화의 논리를 통해 담화 속에서 어떻게 합의에 도달하는지 보여주려 했다. 합의지향적인 논의의 힘을 여러 측면에서 설명했는데 아직도 Habermas의 의도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논의의 형식적 구조만으로는 합의를 지향하는 논의의 힘이 제대로 설명되고 있지 못하다. Habermas의 이상적 언어상황(ideale Sprechsituation)은 합의를 지향하는 논의의 힘으로서 가장 강하게 주장되고 강조되는 듯하다.

## 5. 이상적 언어상황

Habermas는 이론적 담화의 형태는 단계적으로 인식주체의 철저화(Radikalisierung) 즉 자기반성을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단계는 문제시된 주장으로부터, 타당성요구가 담화의 대상으로 된 주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단계는 담화에 들어가는 단계이다. 두번째 단계는 문제시된 주장의 이론적인 설명에 있다. 선택된 언어체계 내에서의 논거의 제시이다. 이 단계는 이론적 담화의 단계이다. 세번째 단계는 이미 선택된 언어체계의 수정 또는 언어체계의 적합성에 대한 고려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 단계는 메타이론적 담화의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와 그 이상의 철저화는 본질적인 언어비판의 형식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부적합한 언어 - 개념체계의 성공적인 극복의 형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식정보의 재구성이다. 이 단계는 인식비판의 단계인데 Habermas는 이 단계는 이론적 담화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보고 있다.<sup>29)</sup>

유사한 방식으로 실천적 담화의 형태 역시 단계적인 철저화, 즉 행위주체의 자기반성을 가능케 한다. 첫째 단계는 문제시된 명령 또는 금지로부터 그의 타당성요구가 담화의 대상이 된 권유 또는 경고로 나아가는 것이다. 담화로 들어가는 단계이다. 둘째 단계는 문제시된 명령 또는 금지의 이론적인 정당화에 있다. 즉 선택된 언어체계 내에서 논거의 제시에 있다. 실천적 담화의 단계이다. 세째 단계는 처음에 선택된 언어체계의 수정으로, 또는 언어체계의 적합성에 대한 고려로 넘어가는 것이다. 메타윤리학적, 메타정치학적 담화이다. 마지막 단계와 그이상의 철저화는 우리의 지식과 능력의 상태에 대한 욕구구조의 의존성에 대한 반성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Habermas는 인식정치적 의지형성(erkenntnispolitische Willensbildung)의 단계라 본다. 이 마지막 단계는 실천적 담화의 한계를 넘어선다. 어떤 인식을 원해야하는지(wollen sollen)의 실천적 물음이 어떤 인식을 우리가 원할 수 있는지(wollen können)의 이론적인 물음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Habermas는 합의를 지향하는 논의의 힘이 우리가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 논의의 차원을 왔다갔다할 수 있는 데에 있다고 주장한다. 담화의 형식적 속성의 토대 위에서 담화차원들 사이를 왔다갔다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될 때에만 논의가 지향하는 합의는 논증적 타당성요구의 이행을 위한 충분한 기준이 된다. 이러한 형식적 속성을 충족시킬 수 있

주 28) WT, S. 252.

29) WT, S. 253.

는 조건은 다름아닌 이상적 언어상황의 속성이라고 Habermas는 본다.

Habermas는 외적인 우연적인 영향 뿐 아니라, 의사소통 자체의 구조에서 야기되는 강요 (Zwang)가 의사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상황을 이상적이라 본다. 이상적 언어상황은 의사소통의 체계적인 왜곡을 배제한다. 모든 담화참여자에게 언어행위를 선택하고 실행할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면, 오직 그 때에만 의사소통의 구조는 어떠한 강요도 놓지 않는다.<sup>30)</sup>

이상적인 언어상황은 다음 4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모든 담화의 가능적 (potenziell) 참여자에게 의사소통적 언어행위를 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서 그들이 항상 담화를 열고 이의를 통해 질문과 대답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2. 모든 담화참여자는 주장, 권유, 설명과 정당화를 제시할 수 있고 이것의 타당성 요구를 문제시하고 근거지우고 반박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가져서 주제화와 비판의 지속에 대해 어떠한 선입견도 갖지 않아야 한다.

3. 행위자로서 표현적 언어행위를 행하는, 즉 그의 태도 감정과 의도를 표현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가진 화자만이 담화하도록 허용된다.

4. 명령, 반항, 허락, 금지 등의 규제적 언어행위를 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가진 화자만이 담화하도록 허용된다.

1~4에서 제시된 조건들이 담화가 성립될 수 있으려면 꼭 충족되어야 하는 이상적인 대화상황의 전제들이다. 두번째 조건에서 제시된 말의 균등 (Redegleichheit)의 요청은 담화가 합리적 동기부여의 힘을 전개할 수 있기 위해서 모든 담화가 가져야하는 형식적 속성을 나타낸다.<sup>31)</sup>

이상적인 언어상을 특징지우는 의사소통의 구조는 체계적인 왜곡을 배제하고 특별히 행위와 담화 사이의 자유로운 이동과 담화 안에서 여러 담화 차원 사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 언어상황의 조건 하에서 논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가 그때그때 주제가 된 타당성요구의 이행 (Einlösung)을 위한 기준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이성적인 합의는 마지막 단계에서 오로지 이상적 언어상황과의 연관을 통해 기반적인 합의와 구별된다.<sup>32)</sup>

Habermas의 진리 합의론은 이상적 언어상황의 조건 하에서 논의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합의론의 전제가 되고 있는 이상적 언어상황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를 의문시 할 수 있다. 모든 말은 의사소통과정의 시공적인 제한 뿐 아니라 담화참여자의 심리적 부담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는데 이 한계는 이상적 조건의 완전한 충족을 배제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상적 언어상황이란 현실적으로는 실현불가능한 조건이 아닌가 묻게 된다.

이에 대해 Habermas는 이상적 언어상황의 조건을 아프리오리하게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언급된 한계들은 제도적인 대비를 통해 보완되고 약화될 수 있다는 것

주 30) WT, S.255.

31) WT, S.256.

32) WT, S.257.

이다.

한데 더욱 어려운 문제는 이상적 언어상황이 어떻게 확립될 수 있고, 언제 그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느냐하는 것이다. 판단의 외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담화를 이끌어가는지 오히려 강제에 의해 영향받는지 그리고 가상적인 담화가 진행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결코 확신할 수 없다.

이에 대한 Habermas의 답은 이상적 언어상황이란 결코 경험적 현상도 아니고 단순한 구상(Konstrukt)도 아니고, 담화 속에서 피할 수 없이 상호적으로 시도하는 전제라는 것이다. 이상적 언어상황의 개념은 Kant의 의미에서의 단순한 규제적 원칙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적 이해의 최초의 행위와 더불어 이 가정을 실제로 항상 시도하기 때문이라고 Habermas는 주장한다.<sup>33)</sup>

## 6. 맷는 말

Habermas의 진리합의론은 진리상응론의 문제에 답하면서 합의론의 윤곽을 제시하는데, 상응론이 자체 내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더이상 상응론의 태두리 내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합의론을 상응론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듯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Habermas의 진리합의론은 상응론과의 대결을 피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경험의 차원과 담화 차원의 구별, 경험대상과 사실의 구별에서 그 전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Habermas의 이러한 구별 역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담화 속에 개입되는 경험적 자료들은 Habermas를 논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합의론과 상응론의 관계가 문제시될 수 있는데, Habermas의 합의론은 상응론과의 대결을 피하면서도 자체 내에 상응론을 은연중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Habermas의 근본 테제인 ‘진리는 확언적 언어행위와 관련된 타당성요구이다. 한 진술이 참이라고 말해지는 것은 진술의 주장이 정당화되는 것을 말한다’ 역시 문제가 많은 테제임에는 틀림없다. 근거지워질 수 있는 또는 정당화될 수 있는 주장의 진술은 모두 참이라고 볼 수 있을까하는 의문점이 제기된다. 진술을 주장하는데 있어 충분한 근거만을 가지면 진술이 참이라는 주장은 많은 비판이 예상된다.

합의론이 가진 자체 내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상응론과 대결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이론 중 하나로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 합의론은 진리론 중 비중있는 위치를 차지할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

주 33 ) WT , SS . 257-259 .

## 참 고 문 헌

- J. Habermas, *Wahrheitstheorien*, in : *Wirklichkeit und Reflexion*,(hrsg).  
H. Fahrenbach, Pfullingen, 1973.
- J. Habermas, *Moralbewußtsein und Kommunikatives Handeln*, Frankfurt, 1983.
- J. Habermas, Was heißt Universalpragmatik, in : *Sprachpragmatik*,(hrsg), K.O.  
Apel, Frankfurt, 1982.
- J.B. Thompson, Universal Pragmatics, in : *Habermas Critical Debates*,  
edited by J.B. Thompson & D. Held, London, 1982.
- 김 여수, 진리란 무엇인가, in : 현대사회와 철학, 김태길 외저, 문학파 지성, 1981.
- P.F. Strawson, *Truth*,(ed.), G. Pitcher, Englewood Cliffs, 1964.